

1. 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나.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관찰물질의 조사·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별, 관찰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 위치
2. 제1호에 따른 위치별 조사 주기
3. 제1호에 따른 위치별 공개 주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제2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기호(○) 중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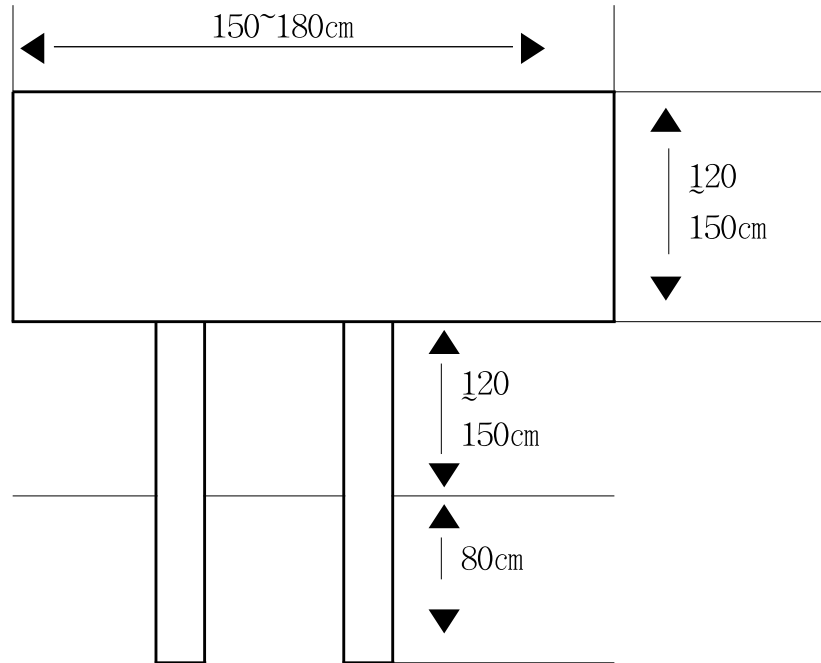
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나. 낚시제한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묶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 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비고 :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4조의6(관찰물질의 조사·공개 등) ①</u> 국립환경과학원장은 <u>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별, 관찰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한다.</u> <u>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 <u>1. 조사 위치</u> <u>2. 제1호에 따른 위치별 조사 주기</u> <u>3. 제1호에 따른 위치별 공개 주기</u>
제30조(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u>법 제20조제2항</u>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30조(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u>법 제20조제6항</u> ----- ----- ----- -----. 1. ~ 3. (현행과 같음)